

재기신청시 안내 사항

○ 기소중지 사건은 통상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,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, 불법 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, 수사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여 검찰청과 외교부와 공동으로 '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' 및 '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'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

-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, 피해자가 있는 경우 **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**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합니다.

○ “신청인 란”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재기신청 후 시차문제 등으로 검찰청에서는 주로 이메일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메일 오류시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. 특히, 이메일 기재시 **영문과 숫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표기**하여야 합니다(영문 o와 숫자 0, 영문 l과 숫자 1, 기호 사용 등).

○ “재기신청 사건 란”은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기억나는 부분까지만 기재하여 주시고,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

○ 사안이 중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재기신청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 해당 검찰청에서는 신청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'계속 소재불명'을 사유로 '부재기결정'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, 재기신청 후 막연히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전화나 메일을 보내서 **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등을 확인**하시고, **확인 후 해당 검사실로 연락**을 하셔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재기신청자 주소가 국내에 없기에 처분결과가 전산으로 통지되지 않으므로 처분결과는 해당 검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대검찰청 형사1과 김영산 수사관 : 02-3480-2266, zhd0000@spo.go.kr (각종 문의사항은 이메일 사용 권장)